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25호

2019. 9. 19.

| 건 명 | 논산시 식품진흥기금 (보건위생과) | 설치 및 운용 조리 | ᅨ 일부개정조례안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안 및 제출자 | 논 산 시 장 | 제안연월일 | 2019. 9. 11. |
| 소 관 위 원 회 | 행정자치위원회 | 회부연월일 | 2019. 9. 11. |

보 고 내 용

| □ 제안이 | 유 |
|-------|---|
|-------|---|

○ 부처이동에 따른 직속기관장 변동으로 위원회 구성 개정이 필요함.

□ 주요내용

- O 논산시 식품진흥기금위원회의 위원회 위원변경(제4조제3항제1호)
 - 위원 중 친절행정국장을 보건소장으로 변경

□ 검토의견

○ 부처이동에 따른 직속기관장 변동으로 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하는 것으로,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제6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제126호

2019. 9. 19.

| 건 명 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보건위생과) | | | |
|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안 및 제출자 | 논 산 시 장 | 제안연월일 | 2019. 9. 11. |
| 소 관 위 원 회 | 행정자치위원회 | 회부연월일 | 2019. 9. 11. |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관련 조례 당연직 위원의 노인업무 관할부서 변경에 따른 해당 과장을 위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「논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」의 당연직 위원 변경(제6조제3항제1호)
 -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100세행복과장으로 변경

□ 검토의견

○ 노인업무 관할부서 변경에 따라 담당과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,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

검 토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제127호

2019. 9. 19.

| 건 명 |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(보건위생과) | | |
|----------|--|-------|--------------|
| 제안 및 제출자 | 논 산 시 장 | 제안연월일 | 2019. 9. 11. |
| 소관위원회 | 행정자치위원회 | 회부연월일 | 2019. 9. 11. |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○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제4조에 의거 논산시립노인전문 병원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(시설)

►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

나. 위탁기간

- 현재 : 2017. 10. 14. ~ 2019. 12. 31.

- 향후 : 2020. 01. 01. ~ 2022. 12. 31.

다. 사업범위 : 치매 등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

라. 사업내용 : 치매환자의 진료 및 요양병원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등

마. 시설 현황

- 위치 : 논산시 시민로 294번길 11

- 시설규모 : 1,643 m², 건축연면적 2,808.96 m²(지하1층, 지상3층)

- 병실 및 병상수 : 12실/98병상

- 진료과 : 신경과, 재활의학과

바. 위탁근거

- 「치매관리법」제16조의3

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」제4조.

「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4조

□ 검토의견

○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위탁 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의 효율적 운영·관리를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,「치매관리법」제16조의3,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제4조, 「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」제4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.